

「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5년 11월 25일

국토교통부장관

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

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재검토기한) <u>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1일</u> <u>까지로 한다.</u></p>	<p>제21조(재검토기한) <u>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